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(강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41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4. 2. 17.

발 의 자 : 강은희 · 김태흠 · 홍지만
김진태 · 이현승 · 신동우
윤재옥 · 김한표 · 이완영
류지영 · 문정림 · 윤상현
이채익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, 업무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적합한 공직자의 임명 및 정당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.

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상털기식 도덕성 검증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, 과도한 신상털기로 인해 공직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인격 침해 및 사생활 침해를 겪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따라서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제1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인사청문회로 이원화하여, 제1인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2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함(안 제4조제2항 신설).
- 나. 제1차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되,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제1항 신설).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한다. 이 경우 제1차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제2차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검증 및 업무능력 검증을 위하여 검증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인사청문회는”을 “제2차인사청문회는”으로 한다.

① 제1차인사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등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6항 중 “제4조제2항”을 “제4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) ①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14조(인사청문회의 공개) <u><신 설></u></p> <p><u>인사청문회는</u> 공개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</p>	<p>제4조(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인사청문회는</u> <u>공직후보자의</u> <u>도덕성과 윤리성에 관한</u> <u>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에 관한</u> <u>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한다.</u> 이 경우 제1차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제2차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<u>위원회는</u> 제2항에 따른 <u>공직후보자의 윤리성 검증 및 업무능력 검증을 위하여</u> <u>검증 소위원회를</u> 둘 수 있다.</p> <p>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제14조(인사청문회의 공개) ① <u>제1차인사청문회는</u> <u>공개하지 아니한다.</u> 다만 <u>위원회의 의결로</u> 이를 공개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제2차인사청문회는</u>----- - . ----- -----</p>

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